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58 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제2조(포상대상)에 따른 포상대상 중, '단체'가 의미하는 범위가 불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,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에 대한 포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(포상대상)의 각 호를 신설하여 포상대상 범위를 구체화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24. 2. 1. ~ 2024. 2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1.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
- 2. 군민("외국인"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3. 읍 · 면 단위 이상의 기관 ·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 · 회원
- 4. 그 밖에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·단체 및 거주자

제8조제2항 중 "그외"를 "그 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했 개 정 아 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 이 뚜렷한 공무원, 군민("외국 1.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 2. 군민("외국인"을 포함한다. 인"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때 이하 같다) 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 3. 읍 · 면 단위 이상의 기관 · 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 • 회 원 4. 그 밖에 평창군수(이하 "군 수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군 외의 기관・단체 및 거주자 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(생 제8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(현행 략) 과 같음)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, 상패, (2)-----그 외 -----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 다.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직선거법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이 법에서 "기부행위"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2. 의례적 행위

자. 읍·면·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·예술·체육행사,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(부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수여하는 행위와구·시·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(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, 동호인회,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)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. 다만,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직접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 영 배
연락처	(033) 330 - 2210